# [제19호]

## 글로컬 미래 화학 인재 교육 연구팀 운영지침

제정 2021.04.05.

###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BK21사업 사업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글로컬 미래 화학 인재 교육 연구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행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본 사업팀은 "글로컬 미래 화학 인재 교육 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함)이라 하다.

#### 제 3조 사업팀의 구성

본 사업팀의 구성은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업팀 소속의 업무전담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2장 대학원생 지원

#### 제 4조 참여대학원생

- 1. 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대학생 전원으로 입학후 석사 2년, 박사 4년, 통합과정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말한다. (단, 군복무 및 휴학기간은 위 기간에 미산입)
- 2.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 제 5조 지원대학원생

- 1. 지원대학원생은 교수 개별 평가를 고려하여 참여교수의 추천 및 참여대학 원생의 실적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 2.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130만원을 기준

액으로 하며,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3. 선정 대학원생의 지원 기간은 매년 상반기 (3월~8월), 하반기 (9월~2월)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각 학기 시작 전 참여 교수의 선정 회의를 통하여 지원학생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며, 그 대상을 확정한다. 기준 금액 이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 선정 회의에서 우수성 평가를 거친 후 지원한다.
- 4.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 이상인 대학원생만 지원한다.

### 제 6조 의무

- 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팀이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2. 참여 대학원생이 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 주 40시간의 업무 수행 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팀장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의 요구에 따라 4단계 BK21플러스 사업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되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4.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1일, 10월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참여대학원생은 사업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을 일체 반납한다)

### 제 3장 참여교수

#### 제 7조 참여교수 선정

참여교수의 초기 선정은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의 교수 5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기준을 따른다.

- 1. 사업기간(2021.09.01~2027.08.31) 전 기간에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참여 해야하다.
- 2. 4단계 BK21플러스 사업 규정에 따른 참여교수 자격요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제 8조 참여교수 교체

- 1. 사업 참여 교수의 교체 및 충원은 4단계 BK21 사업 규정에 따른다.
- 2. 사업팀 소속의 기존 참여교수가 참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팀장은 재단의 기준에 만족하는 참여 교수를 새로 선발 하여 교체한다.

- 3. 재단의 참여 요건 미충족 이외의 사유로 사업 참여 교수 본인이 사임의 경우는 사업 참여 교수의 전체의 80%이상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 4. 사업 참여 교수의 연구 및 학생 지도의 성과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80%이 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사임을 권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신청한다.
- 5. 참여 교수가 3년 연속 SCIE 등재 논문을 출판하지 않는 경우, 사업팀장은 참여 지속 여부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참여 불가에 대해서는 제 8조 4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 9조 참여교수 증가(추가)

- 1. 사업팀 소속의 기존 참여교수 이외에 새로운 교수가 사업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팀장이 재단의 기준에 만족하는 참여교수를 선발한다. 참여교수 추가 승인 후 증가된 참여교수의 전체 수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2. 신규 참여 교수의 자격 요건은 직년 2년 평균 발행 논문의 수 또는 직년 2년 평균 논문의 Impact Factor가 기존 참여 교수의 평균을 상회하여야 한다. 또한 각 논문의 주저자, 공저자 비율은 2020년 4단계 BK21 지원 시 규정을 적용한다.
- 3. 신규 참여 교수의 평가는 평균 논문 수 40점, Impact Factor 40점, 확보 대학원생의 수 20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 참여 교수 선정이 경쟁 평가인 경우, 각 항목별 1위에게 산정 최고점(40/40/20)을 부여하며, 차 순위자에게 각 항목별 총점 대비 10% 감점을 부여한다.
- 3. 신규 참여의 승인은 전북대학교 화학과 학과장을 포함하여 4단계 BK21 참여 교수의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신규 참여 교수의 모집의 사유가 기존 참여 교수의 자격 요건 상실에 의한 경우는, 위의 참여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 4장 신진연구인력

### 제 10조 신진연구인력 구성 및 임용 절차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 과정생을 말하며, 사업팀장은 사업 관리운영 지침의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선발한다.

### 제 11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 1. 국고지원금을 지원 받는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이후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 2. 계약금액은 월 300만원에 4대보험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그 외의 모든 조건은 대학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준에 따른다.

### 제 12조 의무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사업팀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다. 사업팀장은 BK21플러스 사업의 기여도(논문, 학회발표 실적)에 따라 채용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5장 해외연수

### 제 13조 단기해외연수(국제학술활동)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개선을 위하여 단기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때 해외 연수학생의 선정이나 금액 및 참가는 BK21플러스 사업 규정에 준수하여 사업 팀장이 결정한다.

#### 1. 선발기준

사업팀장은 교육목적상 필요로 하는 참여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도와 연구 성과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최근 2년간 SCIE 논문 주저자 1편 이상을 개제 또는 투고를 한 대학원생을 우선 선발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각 사업팀 참여 교원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선발 자격을 부여한다.

#### 2. 지원 기준

항공료, 등록비, 국외체재비의 항목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 금액 및 집행 방법은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 제 14조 장/단기 해외 공동 연구 연수 지원(방문연구 및 해외 연구 활동)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장단기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 학회 참여가 아닌 실제 실험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 활동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때 해외연수학생의 선정이나 금액 및 참가는 BK21플러스 사업 규정에 준수하여 사업팀장이 결정한다.

### 1. 선발기준

참여 학생의 연구 계획서, 지도 교수의 추천서, 상대 국가 연구팀의 추천서

및 상세 연구 내역을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교수의 60%가 동의하는 경우 예산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 2. 지원 기준

항공료, 등록비, 국외체재비의 항목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 금액 및 집행 방법은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 제 15조 해외 학자의 초빙 또는 강연 지원

본 사업단의 국제적 위상 정립 그리고 활발한 해외 교류를 위한 해외 학자 초 빙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1. 해외 학자의 요건

해외 학자는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다. 현재 은퇴 등의 사유로 소속이 없는 경우는 대표 업적 또는 수상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비용의 지급 기준

모든 비용의 지급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준에 따른다.

3. 방문 기간 활동의 조건

해외 학자의 방문의 경우 학과 강연 1회 이상을 수행한다. 또한 각 교원별 연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해외 학자의 초빙을 신청한 교원은 신청시 활용계획서, 그리고 활용 종료 이후 1주일 이내 비용 정산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 6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 16조 운영위원회의 참여 요건

운영위원회는 BK21 사업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 하며 결정한다. 본 운영 지침에 기술된 모든 결의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

- 1. 운영위원회는 BK21 참여 교수로 구성한다.
- 2. 연구년, 병가, 출장, 개인 휴가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동의서로 참석을 갈음할 수 있다.
- 3. 사업팀장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업팀장이 사전에 지정한 교수의 주관으로 운영위원회를 실시한다.
- 4. 사전에 주관 교수가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참여 교수가운데 임시 단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실시한다.

### 제 7장 참여 인력의 성과급 지급

### 제 17조 성과급 지급 규정

매년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1. 우수 논문 출판 보상

매 사업년도 7월 및 1월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발표 우수 논문에 대한 참여 교수 및 외부 평가 위원 2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논문 출판자에 대한 보상을 시행한다.

2. 우수 연구자 보상

매년 1월 각 연도별 우수 대학원생에 대하여 성과급을 집행한다. 그 범위는 각 년도 예산 배정에 따른다.

### 제 8장 보칙

### 제 18조 준용

이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BK21 사업 훈령과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기간) 이 지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수행한 교육연구단의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